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0재다385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
원고(재심원고) A
피고(재심피고)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재다29820 판결
판 결 선 고 2020. 10. 15.

주 문

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
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정화

 대법관 이기택

 대법관 김선수

주 심 대법관 이흥구